

□ 관련규정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(계약의 방법) 5항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31조(수의계약 내역의 공개)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4조(계약 정보의 공개) 제1항에 따르면 계약체결의 현황,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제2항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정보처리장치 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6조의2(지방재정정보화)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도록 규정

□ 지적사항

사례1> 사무관리비 지출 등 4건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계약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으며, 계약체결 현황 등 계약정보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음

사례2> 물품 및 용역 수의계약에 대해 정보시스템(e호조)에 입력을 누락하여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가 공개되지 않음

□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-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시스템에 기록·관리 및 공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